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100058**  
신청인: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  
피신청인 : 권혁춘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

대리인 : 변호사 김용갑, 서울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7층(우:100-784)

피신청인: 권혁춘, 울산시 중구 성남동 39-3

분쟁 도메인이름은 “cafe24.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메가존(주) 호스팅케이알(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527-13 삼남빌딩  
3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1.12.8.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12.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1.12.9.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1.12.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1.12.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1.12.9.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1.12.29.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1.12.29.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1.12.29. 답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2012.1.2.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 후보자 명단 5명을 양당사자에게 제공하였고, 2012.1.9. 센터는 양당사자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1순위인 서정일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1.9.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1.13.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 및 일본에 "Cafe24" 및 이를 포함하는 상표서비스 표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Simplex Cafe24"에 대해 웹사이트호스트업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고 있고, 그 외 "Cafe24" 및 "카페24"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에 보통명사 "Cafe24"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해도 신청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피신청인은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곳에 "[패션]카페24" 이란 쇼핑몰정보순위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

"Cafe24"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일반명사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서 신청인의 고유 사업영역 내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Cafe24.net>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명의로 <Cafe24>을 대한민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지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웹호스팅, 쇼핑몰호스팅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기업이다. 신청인의 본건 서비스표는 웹호스팅의 전문브랜드로서 신청인을 대표하는 표지로서 한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서비스표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회원수,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Cafe24"는 신청인의 주요 표장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서비스표 "Cafe24"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인의 식별력 있는 출처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Cafe24.net>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Cafe24"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청인의 신뢰도와 인지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라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의 대표적인 영업표지인 이 사건 서비스표가 관련 업계에서뿐 아니라 수요자들 사이에 양질의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여 영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이 "Cafe24" 및 "카페24"를 포함한 상표권이 아닌 "Simplex Cafe24"에 대해 웹사이트호스트업을 지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표권 출원등록이 안된 이유는 일반명사인 "Cafe"와 "24"의 조합으로 이러한 일반명사의 조합은 상표권등록이 안될뿐더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Cafe24.net>은 <Cafe24.com>과는 전체 디자인, 서비스 분야에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어 수요자를 혼란케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사이트 하단에 <Cafe24.com>과는 무관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Cafe24"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신청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본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 “cafe24.net”은 “cafe24”와 “.net” 두 용어의 합성어로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서비스표 “Cafe24”와 비교할 때 단순한 결합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식별력이 없는 “.net”을 제외하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요부는 “cafe24”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신청인의 등록표장과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피신청인이 “cafe24”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해당될 수 있고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의 표장 “CAFE24”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요부인 “cafe24” 과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떠한 개연성이나 정당한 사업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인용상표의 상태 및 인지도, 피신청인이 다른 보통명칭을 등록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사용”이란 반드시 도메인이름을 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그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 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cafe24.net>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정일

---

서정일  
1인 조정인

결정일: 2012년 2월 3일